

김제시리·동이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2004
번호	-12

제출년월일 : 2004. 4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김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(2001. 11.12)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리·통장 임명절차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읍면동 분리.통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제5항)
- 리·통장임명절차중 “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”를 “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”로 규정함(안 제3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부칙
- 입법예고(2004. 3.22~4.12)결과 : 특기사항 없음.

김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리·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”를 “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하부조직)①~④ (생략)</p> <p>⑤ 일선행정예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·통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2조(하부조직)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<p>제3조(리·통장의 임명)①~③ (생략)</p> <p>④ 리·통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·면·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제3조(리·통장의 임명)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리·통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·면·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